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유동수·고용진·송옥주

이개호・송영길・정춘숙

송석준 · 김교흥 · 이상헌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 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지급여력비율(RBC), 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시장 변화 및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보험상품의 종류, 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 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 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는 각 호에 규정된 자본 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생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2)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 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u><</u>단서 신설> --.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 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생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모집수단 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규모 등 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이 한정된 보험회사는 각 호에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본 규정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 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 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 수 있다. 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 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을 하는 보험회사: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